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72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피고, 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146481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20. 7. 20.”을 “2020. 7. 10.”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149,0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50,574,51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피고 D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9행의 “피고 B”를 “원고 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9행부터 5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 C이 ① 민법 제756조 제1, 2항, ② 또는 상법 제401조 제1항, ③ 또는 민법 제750조, ④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같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에 같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같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느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에게 민법 제756조 제2항의 대리 감독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사장으로서 G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게 한 점, ② 원고들이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자 명의는 피고 C으로 되어 있고, G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 ③ 피고 C은 E의 누나로서 2010. 8.부터 계속 G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들은 피고 C 개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이 E의 누나로서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E이 G의 사장으로서 영업활동을 할 때 피고 C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G의 대표자인 피고 C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G)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피용자인 E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C은, E이 G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자신은 G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E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④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보증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 C이 G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님을 알았다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C이 G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보증금을 송금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해서도 E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자신이 G의 영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 C은 동생 E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①~④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20. 7. 20.”은 “2020. 7. 10.”의 오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 판사 김창형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

1층 431.1996㎡

2층 431.1996㎡

3층 431.1996㎡

4층 431.1996㎡

5층 431.1996㎡

6층 431.1996㎡

7층 431.1996㎡

8층 431.1996㎡

9층 431.1996㎡

10층 431.1996㎡

11층 431.1996㎡

12층 431.1996㎡

13층 431.1996㎡

14층 431.1996㎡

15층 431.1996㎡

지층 432.2536㎡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84.9959㎡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대 28014㎡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8014분의 52.8971. 끝.

